

교원의 기술 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



CONTENTS



I

교원창업 연구윤리 이슈 도출

1. 개요	06
2. 이슈 도출 모델	08
3. 교원창업 연구윤리 이슈 도출	10
가. 사람	10
나. 기술	11
다. 자금	12
라. 인프라	13



II

교원창업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1. 개요	16
2. 가이드라인	17
가. 사람	17
나. 기술	32
다. 자금	56
라. 인프라	67

I

교원창업 연구윤리 이슈 도출



1. 개요	06
2. 이슈 도출 모델	08
3. 교원창업 연구윤리 이슈 도출	10
가. 사람	10
나. 기술	11
다. 자금	12
라. 인프라	13

I

교원의 기술 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

교원창업 연구윤리 이슈 도출



1. 개요

◆ 교원창업의 양적 증가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교원, 대학, 대학원생, 기업 사이의 이해충돌 등 다양한 연구윤리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 교원창업 연구윤리 이슈의 근본적인 이유는 교원이 교원의 신분과 창업기업 임직원으로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임

- 교원창업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은 구조적으로 대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 분야 등과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발생함
- 교원이 휴직이 아닌 겸임·겸직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창업활동으로 인해서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에서 업무공백 발생 가능성이 있음
- 교원은 연구 및 창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경제적 이익을 전유할 수 있는 창업기업으로 가져가고 싶은 유인이 존재함

- 대학은 소속 교원의 창업과 관련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창업 전·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대학에서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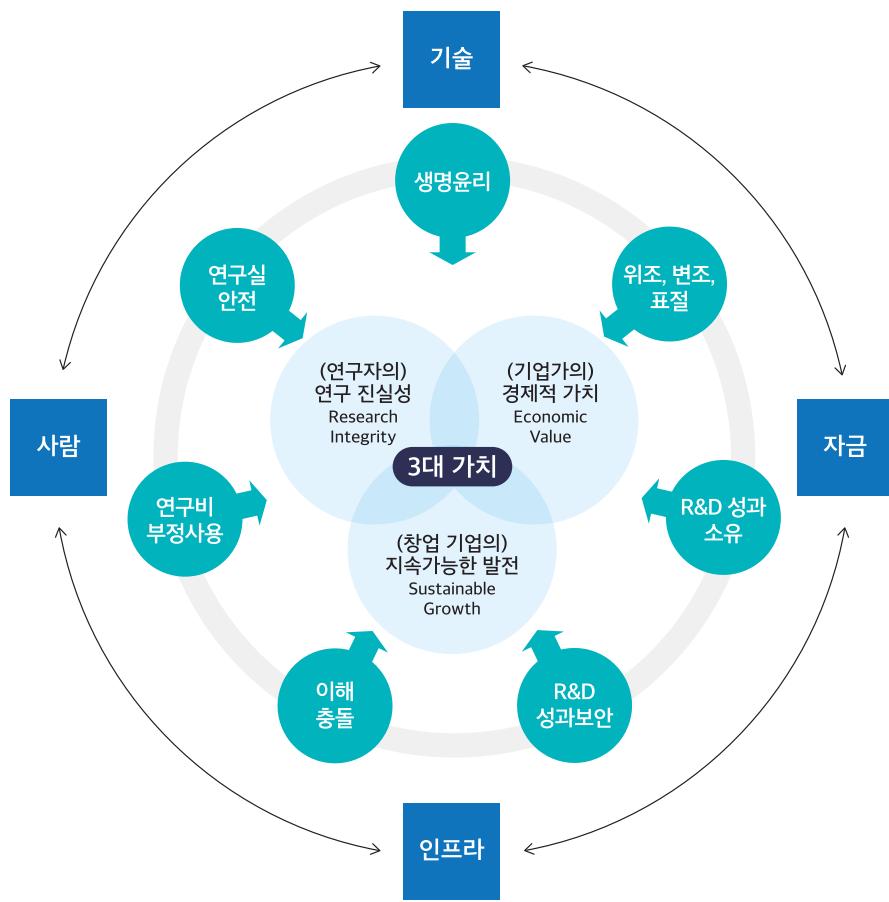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원창업 연구윤리를 “교원이 창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알고 실천해야 할 가치나 규범”으로 정의하고, 교원창업 연구윤리를 통해 얻고자 하는 3대 가치를 제시함

"교원창업 연구윤리 3대 가치"		
1	2	3
기업가로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을 준수함으로써	교원(연구자)창업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Growth)을 지향

<그림 1> 창업 연구윤리 구조 및 방향성



2. 이슈 도출 모델

◆ 창업활동 요소별로 연구윤리 영역별 진단모델을 설계하고 이슈 도출

- (창업활동 요소) 사람, 기술, 자금, 인프라
- (연구윤리 영역) 혁신법에 근거하여 7대 연구윤리 영역을 설정
 - ① 이해 충돌, ② 위·변조, 표절, ③ R&D 부정 사용, ④ R&D 성과 소유, ⑤ 보안, ⑥ 생명 윤리, ⑦ 연구실 안전 부문으로 구분
 - 혁신법 및 교원창업 관련 법률,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7대 창업 연구윤리 영역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음

< 표 1 > 창업 연구윤리 영역에 대한 조작적 정의

구분	개념 정의	선행연구
이해충돌	연구자 및 관계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연구, 교육 등 역할별 요구되는 본연의 행동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출판윤리 길잡이]
위·변조, 표절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 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혁신법시행령]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연구 윤리 요소	연구개발비의 “부당한” 방법으로의 사용 또는 사적 이익을 취한 행위	[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R&D 성과 소유	사전 계약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에 대하여 제3자 이전, 개인적 소유 등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하는 행위	[혁신법]
R&D 성과 보안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혁신법]
생명 윤리	인간대상 연구 시 생명윤리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	[생명윤리법]
연구실 안전	실험실 안전을 따르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행위	[혁신법 시행령]

◆ 창업활동 요소별 연구윤리 영역을 구조화 하여 모델 설계

< 표 2 > 교원(연구원)창업 연구윤리 분석 모델1

창업활동	연구윤리	이해 충돌	연구성과의 위·변조 표절	연구비 부정 사용	R&D 성과 소유	R&D 성과 보안	생명 윤리	연구실 안전
인프라								
인프라		✓						
자금			✓					
기술				✓	✓	✓	✓	
인프라				✓				
인프라							✓	

< 표 3 > 교원(연구원)창업 연구윤리 분석 모델2

구분	세부내용	관련 법률
인프라	① 인적 이해 충돌	시행령 58조 1항-3
	② 직무상 이해 충돌	
인프라	③ 연구개발 성과의 위조·변조·표절	혁신법 31조 1항-1
	④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관리	혁신법 31조 1항-3
인프라	⑤ 연구개발 성과 보안	혁신법 31조 1항-4
	⑥ 인간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	시행령 56조 1항-3 생명윤리법
인프라	⑦ 연구개발 과제의 신청 및 수행	혁신법 31조 1항-5 시행령 64조
	⑧ 연구비 부정 사용	혁신법 31조 1항-2
인프라	⑨ 연구실 안전	시행령 56조 1항-4 연구실안전법
	⑩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시행령 58조 1항-5

3. 교원창업 연구윤리 이슈 도출

가. 사람(이해충돌)

1 인적 이해 충돌

이슈 1-1

- 교원 창업자가 명확한 기준과 보상계약 없이 지도학생에게 연구실과 창업기업의 업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 인적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함

이슈 1-2

- 교원 창업자의 지도학생이 창업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본인의 학술적 성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인적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함

이슈 1-3

- 지도학생이 연구실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기업의 지분 배분에 대한 인적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함

2 직무상 이해충돌

이슈 2-1

- 교원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함에 있어, 교원 본연의 업무인 연구와 교육 등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경우 직무상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함

나. 기술(연구개발 성과 등)

3 연구개발 성과의 위조·변조·표절

- 이슈 3-1 ● 연구개발 수행결과로 산출되는 성과물이 없는데도 있다고 발표하는 행위(위조), 성과가 적은데도 많은 것으로 과장하는 행위(변조), 연구 실패 가능성이나 사고 위험성을 축소하는 행위(변조) 등에서 연구진실성 이슈가 발생함
- 이슈 3-2 ● 타인의 기존 연구성과(기술, 제품 등)를 정당한 계약 없이 무단 이용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제품을 생산하여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경우 등에서 표절 이슈가 발생함
- 이슈 3-3 ● 자신의 기존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을 마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발표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마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투자자에게 보고(기술명, 상품명 변경)하여 이익 지분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서 자기 표절 이슈가 발생함

4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관리

- 이슈 4-1 ● 직무발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원 창업 이후 전용실시권 계약 및 기술이전의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대학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연구윤리 이슈가 발생함
- 이슈 4-2 ● 교원 창업가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기본적으로 교원의 신분이므로 창업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교원이 참여한 경우)을 통해 취득한 기술의 소유권을 교원창업기업이 단독으로 갖게 되는 경우 연구윤리 이슈가 발생함

5 연구개발 성과 보안

- 이슈 5-1 ● 교원 창업자가 교원 신분으로서 수행한 보안과제(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이 있는 연구 등)를 창업기업에서 활용하는 경우 보안 관련 이슈가 발생함
- 이슈 5-2 ● 교원 창업자의 창업기업 종업원 관리 소홀로 보안 관련 이슈가 발생함

6 인간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

- 이슈 6-1 ● 연구를 수행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간대상 연구'나 '동물 실험'을 수행할 때 다양한 연구윤리 이슈가 발생함

다. 자금(연구비)

7 연구개발 과제의 신청 및 수행

이슈 7-1

- 교원(연구자)이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하는데 있어, 대학 또는 교원창업기업으로 선택적으로 수주할 수 있어 연구윤리 이슈가 발생함

이슈 7-2

- 교원(연구자)이 창업기업의 대표를 겸직함으로 인해 적정 수준 이상의 과제를 수주함에 따라 연구윤리 이슈가 발생함

8 연구비 부정사용

이슈 8-1

- 교원 창업자가 지출 관련 계약서, 영수증 등의 위조·변조로 연구개발비를 전용·횡령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손실을 유발할 경우 연구비 부정사용 이슈가 발생함

이슈 8-2

- 교원 창업자가 연구원, 대학(원)생 등을 고용하면서 지급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하거나, 대학(원)생을 저임금 또는 무임금으로 활용할 경우 연구비 부정사용 이슈가 발생함

이슈 8-3

- 교원 창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설·장비 임대, 재료·기기 구매, 검증 테스트, 시제품 제작, 완제품 생산 등을 진행할 때 자신과 인적·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과 계약하여, 연구개발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부당 회수(리베이트)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 연구비 부정사용 이슈가 발생함

라. 인프라(공간 등)

9 실험실 안전

이슈 9-1

- 교원 창업자로서 기업 내 실험실 안전에 대한 조치와 안전 교육과 관련한 여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이슈 9-2

- 창업기업의 대표, 교원으로서 동시에 연구를 수행하면서 장비나 관리의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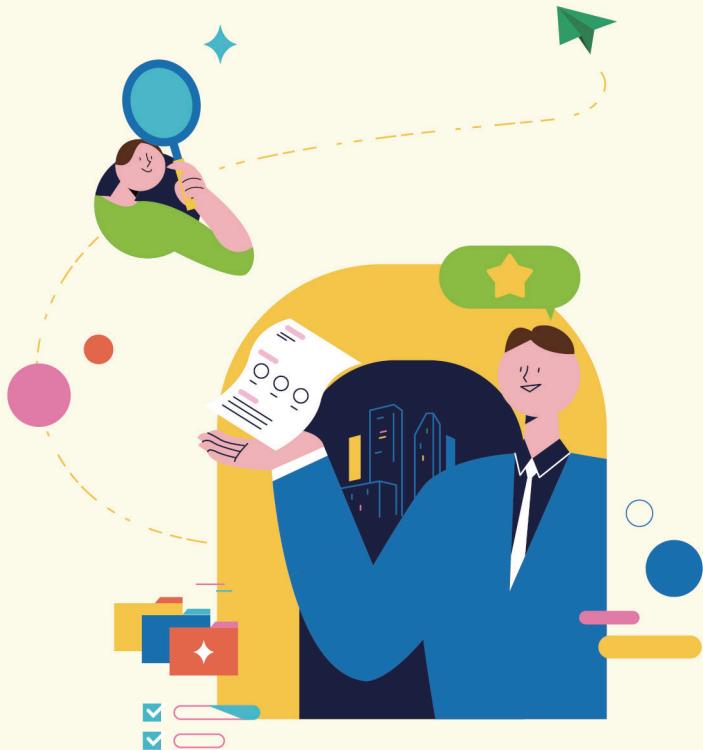
이슈 10-1

- 교원 창업자가 연구원 및 대학(원)생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연구자 간 상호 존중이 부족할 경우 건전한 연구실 문화 관련 이슈가 발생함



II

교원창업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1. 개요	16
2. 가이드라인	17
가. 사람	17
나. 기술	32
다. 자금	56
라. 인프라	67

II

교원의 기술 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

교원창업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1. 개요

◆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

- 창업활동 요소별 연구윤리 영역별 진단모델에 근거하여 10대 이슈 및 20개 세부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 표 4 > 교원(연구원)창업 연구윤리 분석 모델2

구분	세부 내용	세부 이슈
사람	① 인적 이해 충돌	3
	② 직무상 이해 충돌	1
기술	③ 연구개발 성과의 위치·변조·표절	3
	④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관리	2
자금	⑤ 연구개발 성과 보안	2
	⑥ 인간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	1
인프라	⑦ 연구개발 과제의 신청 및 수행	2
	⑧ 연구비 부정 사용	3
	⑨ 연구실 안전	2
	⑩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1

- 10개의 이슈에 대해 앞부분에 주요 이슈,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을 표로 정리
- 본문에서는 주요 이슈, 관련 법규, 운영 사례,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설명
 - 주요 이슈에는 이슈와 관련한 개념 및 다양한 사례를 포함
 - 관련 법규에는 법률, 가이드라인, 지침서 등 해당 이슈와 관련 내용을 설명함
 - 운영사례는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국내 외 대학 및 지침서 등의 내용을 정리함
 -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3대 원칙에 근거하여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제시함

2. 가이드라인

가. 사람

1 인적 이해 충돌

< 표 5 > 인적 이해 충돌 주요 이슈 및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이슈	가이드라인
이슈 1-1	· 교원 창업자가 명확한 기준과 보상계약 없이 지도학생에게 연구실과 창업기업의 업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	· 교원 창업자는 원칙적으로 대학원생을 교원 창업기업의 업무에 참여시키지 않아야 함. 단, 학생의 연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시킬 수 있으나,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이슈 1-2	· 지도학생이 창업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학술적 성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 교원과 학생은 교원 창업기업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학술적 활용 방법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함으로써, 연구 결과물을 학술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슈 1-3	· 학생이 연구실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기업의 지분 배분	· 학생 창업자가 연구실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교원은 학생 창업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창업기업의 지분 배분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관련 법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사립학교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안내서· 발명진흥법· 특허법		



주요 이슈

① 인적 이해충돌

이슈 1-1

- 교원 창업자가 명확한 기준과 보상계약 없이 지도학생에게 연구실과 창업기업의 업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
 - 연구윤리에서 사람 간의 이해충돌은 특정 연구에 대한 기회, 지원, 업적 평가 등이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는 상황에서 발생함. 즉, 대학원생이 교원으로부터 연구실 내 다른 학생과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연구실 구성원(교원, 타 대학원생)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
 - 교원 창업자의 경우 창업기업과 연구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때, 교원 창업자가 명확한 기준과 보상계약 없이 창업기업과 연구실 업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불공정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특히, 창업기업이 수주한 연구과제에 지도학생을 참여시킬 때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창업기업이 요구하는 업무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의 연구 기회를 상실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이슈 1-2

- 교원 창업자의 지도학생이 창업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학술적 성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인적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함
 - 교원 창업기업에 지도학생이 계약을 통해 종업원으로 있는 경우, 창업기업에서 확보한 연구 성과를 학술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때, 개발된 기술을 창업기업과 사전 조율을 통해 학술적으로 활용(학술 발표 또는 학위논문 게재 등)하기로 했더라도, 기술적 변화 및 기술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 결과물의 외부 노출이 창업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을 유발할 경우 지도학생의 학술적 활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슈 1-3

- 지도학생이 연구실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기업의 지분 배분
 - 교원은 학생 창업자의 기술이 연구실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창업기업에 대한 많은 지분을 확보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학생 창업자와 교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슈 1-1

- 교원 창업자는 원칙적으로 교원 창업기업의 업무에 대학원생을 참여시키지 않아야 하며, 학생의 연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대학원생을 참여시키되, 대학원생 신분으로 받아야 할 교육, 연구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원 창업자는 학생지도에 있어 창업기업에 참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됨

이슈 1-2

- 교원과 학생은 교원 창업기업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학술적 활용 방법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 연구 결과물의 학술적 활용을 못함으로 인한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졸업을 위한 학위논문의 경우 대학 내의 졸업을 위한 절차를 지원하되, 논문의 공개는 기술적 활용 기간 이후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교원은 창업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학생이 참여한 수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합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

이슈 1-3

- 학생 창업자가 연구실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교원은 학생 창업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 창업기업의 지분 배분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이슈 1-1

- 교원 창업자는 원칙적으로 학생에게 창업기업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계약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 대학의 경우 교원 창업자가 창업기업에 대학원생을 종업원 고용 시 적절한 보상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화하고 있음
 - (서울대학교¹⁾) 학생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참여에 대해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창업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창업기업 업무 수행에 따른 정당한 근로계약체결 및 임금 지급과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내·외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를 지급 받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 외 창업 소득은 학생 인건비 계상을 산정 시 제외함
 - (순천대학교²⁾) 창업교원은 기업 운영에 필요로 활용하는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인력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기피나 저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의 의무를 가짐
 - 미국대학의 경우는 연구실과 교원창업기업 간에 강한 방화벽을 설치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함
 - 미국대학의 경우 교수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점을 최우선으로 하며, 학생들을 본인 회사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이용하거나, 교원창업기업에 고용하는 것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음

| 미국대학 교원창업규정 주요 내용 |

- 교원창업기업이 창업교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 대학에서 수행하는 정부과제에 자신의 창업기업을 참여시킬 수 없음. 단, 기업의 개발연구를 지원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교원창업기업을 위한 개발연구를 대학에서 진행할 수 없음
- 교원창업기업의 연구원이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구활동에 의한 결과물은 창업기업에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라도 대학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함
- 창업기업으로부터의 구매 내역은 소속학과장에게 자세한 내용까지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창업 교원은 구매 결정 과정에 자신을 제외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음

출처 : 한국연구재단(2022),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안내서

1) 서울대학교 (2021), 교원창업을 위한 가이드북
2) 순천대학교 (2017), 순천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 캐나다 토론토 대학은 인적 이해충돌 신고 범위를 모든 금전적 보수가 발생하는 활동까지 확대하여 사전 서면 승인을 하도록 요구함

|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인적 이해충돌 신고 범위 |

- 다음 활동들은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
- 모든 금전적 보수가 발생하는 활동
 -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수와 관련된 전문활동을 수행할 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대학자원(대학시설, 소모품, 대학직원, 학생)을 활용할 경우
 - 대학의 자금이 들어가거나 대학이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 교원의 직계 가족 구성원 또는 친밀한 개인적 관계가 존재하는 사람을 고용, 감독, 평가, 구매, 판매, 상업적 거래에 참여시키거나 재정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거나 거절할 수 있는 행위에 참여시키는 경우
 - 교원의 직계 가족이나 친밀한 개인적 관계에 있거나 최근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하거나, 학술적 또는 행정적 혜택을 줄 수 있거나 거절할 수 있는 행위에 참여시키는 경우
 - 대학의 자금이 들어가거나 대학이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 교원의 직계 가족, 친밀한 개인적 관계거나 최근에 개인적인 관계였던 사람, 또는 상당한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을 위해 수행한 연구

출처 : 한국연구재단(2022),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안내서

이슈 1-2

- 국가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대한 비공개 조건이 있으나, 연구 결과물의 학술적 활용과 관련하여 제한 또는 권장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임. 서울대학교는 연구 결과물을 학위논문으로 활용 시, 학위수여는 진행하되 내부 심의를 통해 해당 기술의 학술적 결과의 공표를 3년 이내로 유보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대학원 학위논문 공표유보제도 참고)
- 창업기업이 확보한 기술 또는 연구적 성과가 기술 보호 및 보안 등의 이유로 사전에 계약된 종업원(대학(원)생)의 학술적 활용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종업원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법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연구개발 결과의 비공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원 창업기업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학생의 학술적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규정은 없음
-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학위논문 공표 유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출원 예정과 같이 특수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내부의 심의를 걸쳐 학위논문 결과의 공표를 3년 이내에서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공표유보제도 |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제16조

제16조(학위논문의 공표) ① 학위수여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내에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의 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2015. 9.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위취득자가 특허출원예정, 군사상 비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공표를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9. 5. 14.>

이슈 1-3

- 학생이 연구실에서 기술개발에 기여했다면 공동 발명자로 인정되며,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학생창업을 할 경우 교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지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제시함
 - 국내의 경우 학생이 참여한 기술에 대한 공동 발명자를 인정하고 있으며, 학생이 교원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물을 활용한 실험실 창업 시, 학생의 지분을 인정하고 있음
 - 서울대학교는 최소지분율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원생의 직무발명을 인정하고 있음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지침 내 최소 지분율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

제3조 ⑧발명 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의 발명 기여 지분율은 0%를 초과하여야 한다.
⑩산학협력단장은 제9항에 따라 발명자의 추가, 삭제 또는 발명자의 발명 기여 지분율이 감소할 경우에는 해당 발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은 해당 발명자의 인감증명서 등 해당 발명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한다.

- 대학원생이 실질적으로 기술개발에 기여한 경우, 특허출원 당시 공동 발명자로 포함되지 않아도 공동 발명자로 인정함

| 대학(원)생 공동 발명자에 대한 고등법원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87230 판결

기업이 대학교수에게 발명을 의뢰하였고 지도 학생도 발명에 관여하였는데 기업과 교수만 공동 발명자로 하여 기업 명의로 출원, 등록 받은 것에 대해 지도 학생이 특허지분 이전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지도 학생에게 지분 30%를 이전 등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연구재단(2022),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안내서

- 일본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직무발명 가이드라인은 ‘학생이 행한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 관계가 있는 학생의 연구 프로젝트 중에 이루어진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규정함

| 일본 직무발명 가이드라인 및 특허법 상의 직무발명 내용 |

(직무발명 가이드라인) 제3조 제6항 제3호 대학과 고용 관계가 없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행한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학생 중에는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대학과 고용 관계가 발생하는 학생의 해당 연구 프로젝트 중에 이루어진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직원의 직무발명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이익에 대한 계약, 근무 규칙 등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거나 규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을 상당한 이익으로 한다. 대학과 고용 관계가 있는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 제35조 제7항) 상당한 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상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 제5항의 규정보다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받을 만한 정도의 이익 내용을, 그 발명에 의한 사용자가 받을 이익 액수, 그 발명과 관련해서 사용자가 행하는 부담, 책임 및 종업원 등의 처우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 한국연구재단(2022),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안내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4조)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야 함
- (사립학교법 제72조의 5) 사학기관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규칙으로 정해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즉, 교원은 사적 이해관계를 회피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공정하게 대우함으로써, 당사자가 차별받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4조 공직자의 의무 |

-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사립학교법 제72조의 5 사학기관 행동 강령 |

- ①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교원윤리규정) 대학들은 교원 윤리 규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동료 교원, 직원, 학생 등에게 차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교원 창업규정) 대학들은 교원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영위하면서 학생들을 창업기업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창업기업의 연구 분야와 학생의 연구 분야가 일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의 고용 시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교원의 차별행위 금지와 관련된 대학의 윤리 규정 |

고려대학교 교원윤리규정

제 6 조 (상호존중의무와 차별금지) ① 교원은 동료 교원, 직원 및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
② 교원은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에 대해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대학교 연구지침

2.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인류의 기본 가치 존중
- 신분·나이·성별·인종·종교 등에 따른 차별 불인정
- 연구의 진실성과 개방성 유지
- 연구에 대한 충실향상과 엄밀성
- 공동연구원의 권리 보호
- 자연 환경 침해 금지
- 연구실 안전 유지
- 인간 대상 연구 시 생명윤리 준수
- 동물 대상 연구 시 동물보호 유의
- 관련법과 윤리적 규범 준수

| 교원 창업기업 내 대학원생의 인력관리 관련 대학들의 규정 |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20조(학생지도) 창업교원은 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학생을 창업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교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창업규정

제10조 (교직원창업자의 복무)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 휴직하는 교원은 학과/전공 교원인사심의회 및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강의(휴직의 경우 제외), 학생지도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제한을 받는다.

1. 창업자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창업자는 창업기업의 연구 분야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분야와 유사할 경우에만 학생을 창업기업의 연구 분야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창업자로서 외부 수탁연구를 수행할 경우 위탁기관의 양해 후에 당해 연구비를 창업기업의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순천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18조(인력관리) 창업교원은 기업 운영에 필요로 활용하는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인력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기피나 저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의 의무를 가진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연구개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차하거나, 그 밖의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8.>

1. 최종보고서

2.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의 협정·조약·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차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이내

2.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승인된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안내서) 대학원생의 교원창업기업 참여 시 적절한 대가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교원 창업기업에서 대학원생의 참여는 종업원의 지위가 아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산학협동 연구과제 등에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는 각 특별법 및 관계 법령, 연구협약서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며,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 발명자를 인정하고 있음

| 발명진흥법 직무발명 및 공동 발명 |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 (특허법)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발명을 인정하고 있으며 권리의 공유하도록 하고 있음

| 특허법의 공동 발명 권리 인정 |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2 직무상 이해 충돌

< 표 6 > 직무상 이해 충돌 주요 이슈 및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이슈	가이드라인
이슈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교원 본연의 업무인 연구, 교육 등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경우 직무상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의 창업활동은 교원의 본연 업무(지도, 교육, 연구 활동 등)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관련 법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사립학교법대학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안내서		

주요 이슈

2 직무상 이해 충돌

이슈 2-1

- 교원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교원 본연의 업무인 연구, 교육 등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경우 직무상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함

가이드라인

2 직무상 이해 충돌

이슈 2-1

- 교원 창업자의 창업활동은 교원 본연의 업무인 지도, 교육, 연구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이슈 [2]-1

- 대학은 교원 창업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여 교원의 소속학과에서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화하고 있음

- (국내 사례) 많은 국내 대학이 아직은 교원창업 시 직무상 이해충돌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부 대학에서만 창업 교원의 허용 범위를 소속학과 전체 교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정하는 방법, 소속 단과대학 전체 교수의 8분의 1 이하로 한정하는 방법 또는 창업기업의 기업활동 시간을 교육 및 연구활동 시간의 5분의 1로 한정하는 방법 등으로 교원창업기업과 타 교원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대학들의 교원 창업자에 대한 업무 공백 최소화 관련 규정 |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9조(업무공백 보완) 교원 창업자는 창업활동에 따른 해당 대학 또는 연구소 등에서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활동 등 업무공백을 보완하여야 한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창업규정

제11조(소속부서 업무공백 보완) 교원 창업자는 창업활동에 따른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창업자의 복무) 창업 및 창업 관련 활동을 하려는 교수는 창업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광운대학교 창업규정

제8조(소속학과(부)/부서 업무공백 보완) 창업 교원은 창업활동에 따른 소속학과(부)/부서의 업무공백을 보완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순천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17조(소속 부서 업무공백 보완) 제3조에 따라 창업교원은 이 대학 학칙 및 교학규정에 의한 교원의 교수시간을 준수하고,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해외 대학의 경우 교원의 외부 활동을 규정 등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해외 사례³⁾) 미국 대학의 경우에는 많은 대학이 교원 창업의 업무 공백 최소화와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창업활동을 하더라도 분기별로 교수 본인이 교내에 물리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머물도록 하거나, 다른 활동(외부 컨설팅 등)을 하는 데 휴일을 포함하여 연간 40~5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3) 한국연구재단(2022),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안내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4조 공직자의 의무

-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은 직위를 활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포함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

제72조의 5 사학기관 행동 강령

- ①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대학 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 직무상 이해충돌은 연구자가 여러 기관에서 여러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업무의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로 인하여 소속기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때 직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함

- 교원 창업자 관점에서, 연구자가 외부 활동을 중시하여 소속기관(대학)에서 부여한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경우, 소속기관(대학)의 다른 연구원, 직원, 대학원생 등 인력을 외부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대학 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 |

직무상 이해충돌

정의 : 연구자가 여러 기관에서 여러 역할을 하면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경우

문제점 : 연구자가 소속 기관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소속 기관 본연의 목적인 연구와 교육 활동 등이 저해

예방방안 : 연구자는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를 공개하거나 축소하거나 회피해야 함
공개 또는 관리의 대상

- ① 연구자가 외부 연구나 외부 강연을 중시하여 원소속기관에서의 연구 및 교육업무에 소홀한 경우
- ② 연구를 지원하는 기업 또는 단체의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③ 연구자가 원소속기관의 다른 연구원, 직원, 대학원생 등을 외부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 ④ 원소속기관에서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간이나 연구자원을 개인적인 목적 또는 외부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안내서) 교원 창업자의 창업 활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나, 본 조정안내서에서는 당사자의 창업 활동은 본 소속기관에서 부여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교육공무원 등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음

| 대학 기술사업화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안내서 |

소속대학 및 타 교원과의 갈등 이슈

- 교원 창업자가 휴직이 아닌 겸임·겸직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활동으로 인해서 교육, 연구, 학생 지도 등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소속학과 교원과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대학은 창업 교원의 자격 요건, 타 교원과의 관계와 대학의 재정 기여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함
- 교원 창업자의 교원 창업과 같은 사적 교외 활동은 교육과 연구 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나. 기술

3 연구개발 성과의 위조·변조·표절

< 표 7 > 연구개발 성과의 위조·변조·표절의 주요 이슈 및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이슈	가이드라인
이슈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물이 없는데도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위조), 성과가 적은데도 많은 것으로 과장하거나 실패 가능성 또는 사고 위험성을 축소하는 경우(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는 연구수행 과정과 동일하게 창업과정에서도 전문가 검증 등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정직성, 객관성, 공정성 등 연구진실성 확보에 노력해야 함
이슈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가 타인의 기존 연구성과(기술, 제품 등)를 정당한 승인 또는 계약 없이 무단 이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는 타인의 기존 연구성과를 확인하고,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존 연구성과 활용이 필요할 경우 정당한 승인 및 계약을 통해 활용해야 함
이슈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자신의 기존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및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마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 신규 연구개발이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와 어떤 차이 및 개선점이 있는지 정직하게 공개하고, 새롭게 창출되는 경제적·기술적 가치를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함

관련 법규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1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2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1항



주요 이슈

③ 연구개발 성과의 위조·변조·표절

이슈 ③-1

- 교원 창업자가 연구개발 과제의 사업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에서 산출되는 성과물이 없는데도 있다고 발표하는 행위(위조), 그 성과가 적은데도 많은 것으로 과장하는 행위(변조), 실패 가능성 및 사고 위험성을 축소하는 행위(표절)
 - 사업 성공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데도 실험결과를 위조·변조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연구과제 신청, 투자 홍보 후, 유입된 투자금을 전용 또는 횡령하는 행위
 - 사업수행 결과보고 시 성과 수치를 변조하여 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거나 교원 창업자의 이익 지분 확대를 요구하는 행위
 - 사업 실패 가능성, 실패 시 피해 규모, 보건 및 안전상의 사고 위험성 등을 투자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축소하고 긍정적인 경제적·기술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행위
 - 위·변조된 실험결과를 포함한 채 해외 부실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사업 투자 유치, 상품 판매 등에서 근거자료로 홍보에 활용(ex : 원적외선이 나오는 건강팔찌, 건강목걸이) (출처 : 조선일보, “만병통치 게르마늄 팔찌? 의학적 근거 없다”, 2018.2.8)

이슈 ③-2

- 교원 창업자가 타인의 기존 기술을 정당한 승인 및 계약 없이 무단 이용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제품을 생산하여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행위
 - 타인의 기존 기술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 마치 교원 창업자 자신의 신기술인 것처럼 홍보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타인의 기술로 생산한 제품에 새로운 상표명을 붙여 판매하거나, 이를 연구개발 실적으로 삼아 교원 창업자의 이익 지분 확대를 요구하는 행위
 - 타인의 기존 기술을 정당한 승인 또는 계약 없이 교원 창업자가 무단으로 개량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제품을 생산하여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행위도 표절에 포함됨. 원천 기술의 특허 및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그 개량 기술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에도 우선권이 있기 때문임

이슈 ③-3

- 교원 창업자가 자신의 기존 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발표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존 기술로 생산한 제품에 새로운 상표명을 붙여 판매하거나, 이를 실적으로 삼아 교원 창업자의 이익 지분 확대를 요구하는 행위
 -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마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투자자에게 보고(기술명, 상품명 변경)하여 교원 창업자의 이익 지분 확대를 요구하는 행위
 - 교원 창업자 자신의 기존 기술을 일부 개량하였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과장 보고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이익 지분을 요구하는 행위도 자기 표절에 해당



이슈 [3]-1

- 교원 창업자는 교원의 신분을 잊지 말고, 연구수행 과정과 동일하게 연구진실성 관점에서 창업과정(사업계획 설명, 투자자 유치, 산출 성과의 경제적·기술적 가치평가)에서도 정직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 노력을 해야 함
 - 교원 창업자는 연구개발의 성공 가능성, 산출되는 결과의 경제적·기술적 가치 평가 등에서 투자자(정부, 기업)와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함
 - 교원 창업자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는 행위는 투자자, 소비자 및 사회적 공익에 손실을 유발하며, 특히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서의 연구진실성 침해는 국민 전체의 공익과 국가 안보를 크게 손상할 수 있음
- (객관적 검증 절차 확립) 교원 창업자는 연구개발 대상이 되는 기술 및 제품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대학은 교원 창업자의 연구개발 과제 신청, 사업계획서 심사, 투자설명회 등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검증 등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투자자, 소비자, 정부 및 협력기관 등에 정확한 정보를 알리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슈 [3]-2

- 교원 창업자는 타인의 기존 연구성과를 확인하고,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며, 기존 연구성과 활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당한 승인 및 계약을 거쳐야 함
 - 타인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존중해야 하고, 정당한 승인 및 계약을 거치지 않은 무단 이용은 표절, 특히·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해당하여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함
 - 타인이 고안한 실험방법, 사업 모델(business model) 등에도 지식재산권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 시 표절,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필요

이슈 [3]-3

- 교원 창업자는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해 신규 연구개발이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와 어떤 차이 및 개선점이 있는지 정직하게 공개하고, 새롭게 창출되는 경제적 기술적 가치를 투자자(정부, 기업)와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함
 - 교원창업기업은 신기술 개발(물질 또는 제품 발명 포함) 또는 기존 기술의 혁신적 개량을 통해 산업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교원 창업자가 연구개발 수행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이전의 경제적 가치를 유의미하게 확대할 경우에만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의 의의가 있음

이슈 ③-1

- 사업 성공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데도 실험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한 후,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가 적발·처벌되었음
 - 미국 '테라노스' 사건 : 2014년 '테라노스'사는 적은 양의 혈액 샘플로 200종 이상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에디슨 키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하여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발표된 실험결과는 위조된 것이었고, 해당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됨. 창업자는 투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유지. 2022년 미국 법원은 창업자에게 징역 11년을 선고(출처 : 연합뉴스, "실리콘밸리 사기극 테라노스 전 CEO 징역 11년3개월 선고", 2022.11.19)
- 사업수행 결과보고 시 성과를 위조하거나 수치를 변조하여 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거나 창업자 이익 지분 확대를 요구하는 행위가 종종 적발·조치되고 있음
 - 주식시장 허위공시가 대표적. 허위공시로 주식가격을 상승시켜 창업자가 자기 지분을 매각하거나, 투자설명회 개최로 대규모 투자금 유치, 창업자가 포함된 대주주 이익 배당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이 가능함. A 기업의 신형 반도체 생산 수율이 90%에 달한다는 공시, B기업이 신형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해외에서 3상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공시, C 기업이 해외 리튬 광산에 투자하여 매장량을 확보했다는 공시 등이 가능
 - 허위공시는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는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이슈 ③-2

- 타인의 기존 기술을 정당한 이용 승인 또는 계약 없이 무단 이용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제품을 생산하여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행위가 표절로서 법적으로 규제됨
 - 해외에서 먼저 유명해진 기술 및 제품(유명 의류, 운동기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 생산하여 홈쇼핑,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음(출처 : TV조선, "정부산하 공영홈쇼핑에서 짹퉁 명품 버젓이 판매", 2020.6.23)
 - 타인의 기존 기술을 일부 개량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용 승인 및 계약 없이 무단으로 개량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표절 행위에 포함됨. 기존 기술의 무단 개량으로 창출된 이익은 원천 기술 보유자에게 그 우선권이 있음

이슈 [3]-3

- 교원 창업자가 자신의 기존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을 마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발표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서 자기표절 이슈가 발생함
- 자신의 기존 기술을 일부 개량하였더라도, 마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과장하여 발표하는 경우도 자기표절 유형의 부정행위에 포함됨
 - 2015년 전국 50여개 대학 200여명의 교수들이 적발된, 일명 ‘표지같이’ 수법으로 출판한 교재를 학생들에게 판매한 사건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기존 교재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제목과 목차를 바꾸어 새로운 교재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 과실이 중대한 일부 교수들은 업무 방해죄(대학 인사평가에 지장 초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짐(출처 : 더팩트, “가짜 공저자로 표지같이 대학교수 유죄 확정”, 2020.4.27)
 - 교원 창업자가 이전에 출시한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기구(ex : 건강팔찌, 옥장판), 운동기구 등에 상표명을 바꾸고 새로운 기술 용어를 붙여(ex : ‘음이온’, ‘원적외선’ 등의 용어를 ‘나노기술’로 변경) 마치 신제품인 것처럼 홈쇼핑, 인터넷 등으로 판매함
 - 현재 허위 과장 광고 제품은 대부분 시정 권고 또는 명령과 같은 행정 처분에 그쳐 큰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출처 : 한국일보, “허위광고 넘치는데 물려터진 공정위”, 2016.11.18). 그러나 교원 창업자는 처벌이 두려워서 조심하기 이전에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학자이며 전문가로서 자신의 연구개발 성과의 가치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 제31조 1항에서 위조, 변조, 표절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6조 2항에서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을 정의하면서 표절에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나 성과를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즉 자기 표절을 표절에 포함하고 있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1항에서 위조, 변조, 표절 이외에 별도의 부정행위로 자기 표절의 일종인 '부당한 중복게재'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

혁신법 시행령 제56조 ②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4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관리

< 표 8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관리의 주요 이슈 및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이슈	가이드라인
이슈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직무발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원 창업 이후 전용실시권 계약 및 기술이전의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대학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연구윤리 이슈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은 연구진실성의 관점에서 기술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은 객관적인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한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이슈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가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기본적으로 교원의 신분이므로 창업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교원이 참여한 경우)을 통해 취득한 기술에 대해 교원창업기업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창업 겸직 상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대학과 창업기업 모두에게 일정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단, 이에 관한 절차, 비용 등 관련 내용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가연구개발 혁신법 31조 1항-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2발명진흥법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안내서		



주요 이슈

④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 관리

이슈 ④-1

- 직무발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원 창업 이후 전용실시권 계약 및 기술이전의 과정에서 해당기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대학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교원창업은 벤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직무발명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원창업 이후에는 해당 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 계약과 기술이전 등이 발생하게 됨
 - 이 경우 교수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보다 많이 귀속되는 창업기업이 저렴하게 전용 실시권이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게 기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유인이 존재하여, 대학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
 - 이는 연구개발혁신법의 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이슈 ④-2

- 교원 창업자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기본적으로 교원의 신분이므로 창업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교원이 참여한 경우)을 통해 획득한 기술에 대해 교원창업기업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경우
 - 교원창업은 교원의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벤처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된 경우로 기본적으로 교원의 신분을 갖기 때문에 대학교수가 참여한 발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대학이 소유권을 갖게 됨
 - 따라서 교원창업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교원창업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성과를 소유해야 하지만, 교수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교원창업기업의 성과로 소유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여 대학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
 - 이는 연구개발혁신법의 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와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대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가이드라인

[4]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 관리

이슈 [4]-1

- 교원창업기업으로 기술이전 시 대학규정에 의해 기술료를 책정하거나, 제3 기관으로부터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해당 특허의 적정가치를 산정하여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내용을 관련 규정에 포함해야 함
 - 특히 국공립대학의 경우 '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해당 거래는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함

이슈 [4]-2

- 창업기업의 교원도 대학과 고용 관계에 있는 교수의 신분이므로 연구진실성 측면에서 창업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에 발명신고를 해야 하며, 산학협력단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함
 - 해당 이슈는 형사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창업교원이 이를 알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교원창업규정 등 관련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운영 사례

[4]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 관리

이슈 [4]-1

- 교원창업기업에게 낮은 금액으로 특허 양도(이해관계 조정 안내서, 2022)
 - A대학 B교수는 교원창업기업을 설립한 후 A대학 산학협력단에 해당 특허의 특허 비용 실비만 산정한 저가의 금액으로 양도를 요구함. A대학 산학협력단은 정부 지정 가치평가 기관에 기술가치 평가를 의뢰하였고, 해당 특허가 특허 비용만이 아닌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B교수에게 설명하여 평가액에 상당하는 기술료 조건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하였음
 - 광운대학교는 2020년 직무발명 규정을 개정하여 발명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1)특수 관계 유무 확인서 2)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술의 가치평가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제12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7. 직무발명 권리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실시·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되는 사항
제18조(계약체결) ③ 발명자는 기술이전 계약 협의 단계에서 산학협력단에 특수 관계 유무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④ 발명자와 실시자가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술의 가치평가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고,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에서 외부 기관에 의뢰한 가치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기술료 등에 관한 주요 계약 조건을 결정한다.

이슈 4-2

● 국가연구개발의 성과를 교원창업기업 단독으로 소유

-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나 대학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해당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제3자인 외부 기업 또는 타 기관 명의의 특허출원에 발명자로 기재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교원창업기업의 경우도 포함됨
- 한편, 교수가 교원창업기업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해 개발·완성한 기술을 대학에 알리지 않고, 교원창업기업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형사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유사 판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이 있음

| 직무발명 미신고 및 제3자 명의 특허출원에 대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약정 또는 근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은 그 특허권의 취득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것은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종업원 A 이사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종업원이 임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B)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 31조 1항-3 및 제16조) 교원이 참여한 국가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해야 함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2) 교원은 원칙적으로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관련한 분야에 대하여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음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21. 12. 28.>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발명진흥법 제2조) 「발명진흥법」 제2조는 직무발명의 주체로서 ①종업원 ②법인의 임원 ③공무원을 특정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교수는 종업원, 국립대학의 교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발명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됨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 안내서

대학은 기업과의 거래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상황을 상정한 기술이전 계약서를 준비·활용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조율 및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연구개발 성과 보안

< 표 9 > 연구개발 성과의 보안의 주요 이슈 및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이슈	가이드라인
이슈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가 교원 신분으로서 수행한 보안과제(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와 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핵심기술 등)를 창업기업에서 활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신분으로 보안과제를 수행했다면, 기관 및 국가의 승인을 받고 창업기업에 활용해야 함
이슈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가 창업기업 종업원의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는 기업의 연구 수행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한' 등을 통한 관리, 참여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보안 각서 등을 통해 연구내용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함
관련 법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가연구개발 혁신법 31조 1항~4국가연구개발 혁신법 16조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 지침 및 매뉴얼		



주요 이슈

5 연구개발 성과 보안

이슈 5-1

- 교원 창업자가 교원 신분으로서 수행한 보안과제를 창업기업에서 활용하는 경우
 - 교원으로서 보안과제(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과제)를 수행한 후 창업 기업에 보안 과제로부터 얻은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임

| 참고 |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급은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보안과제란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의미함

출처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보안 관리 및 연구성과 보호의 길라잡이 연구보안의 이해

다만, 본 길라잡이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보안과제로 구분된 연구과제와 보안과제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보안과제의 정의에 근거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경제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과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이슈 5-2

- 교원 창업자가 창업기업 종업원의 관리 소홀
 - 교원 창업자가 설립한 기업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또는 외부인 등이 연구개발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연구보안 문제가 발생함

문제 | 사례

1. 외국인 연구원 등이 연구 기밀 접근을 제어하지 않아 해당 외국인 연구원이 온라인에 별도 사이트를 구축해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출처 : The Science Times, 2006.11.12. 연구 결과물 보호 위해 논문발표 전 특히 출원해야

2. 외국인L씨는 한국의 모기업에 입사하였고, 입사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의 경쟁사인 S회사에 이중 취업을 하였다. 미국의 S회사는 한국 모기업의 기술 정보가 필요했고 해당 정보를 미국의 경쟁사인 S회사에 주었다.

출처 : 보안뉴스, 2007.03.10. 외국인 산업스파이 사건

3. 허술한 사물인터넷 보안으로 40만명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

출처 : 시사IN, 2023.01.13.



이슈 [5]-1

- 교원 신분으로 수행한 보안과제를 창업기업에 활용하고자 하면, 소속기관 및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함

이슈 [5]-2

- 교원 창업자는 기업의 연구 수행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한' 등을 통한 관리, 참여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보안 각서 등을 통해 연구내용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나 개발에 대해 중요도 및 위험도를 평가하여 회사의 중요 자산으로 여겨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권한'의 적절한 부여와 통합인증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규정 등을 통해 접근 권한 등을 관리할 담당자를 정하고 기술자산 유출 사고 발생 시 처리하는 매뉴얼 등을 만들어야 함
 - 회사 내 주요 자산과 자료를 분류하고 관리현황을 파악해야 함
 - 핵심이 되는 기술개발 등에 대해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접근제한에는 ①비인가자 출입통제, ②상황발생시 화상정보 저장, ③심야시간 방범시스템 운영, ④도청, 감청 방지 및 전자파 차단, ⑤내부인트라넷이나 저장장치 등에 엑세스 제한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정보 접근권한 관리나 대외비 지정 등을 통해 핵심적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접근을 차단하고 비밀취급인가, 서약서 등을 통해 정보를 보호해야 함
 -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외부인(타 기관 소속 공동연구자나 방문 연구자 등)의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특이 동향 등을 관리해야 함
 - 대외비를 포함하거나 정보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전 보호교육 등을 실시해야 함
 - * 비밀취급인가는 직원이 비밀을 직접 다루거나 비밀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회사로부터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밀취급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회사 내 주요 자산과 자료를 분류하고 관리현황을 파악해야 함
 - 연구나 제품 개발 성과물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부인 등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해야 함
 -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참여기업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영문 (또는 출신 지역 언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외부로 누설되거나 유출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함

-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부인 등의 특이 동향 등이 발견되면 이를 관리해야 함
- 외국인 유학생 또는 외부인 직원이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방문 목적을 파악하여 연구개발의 정보가 국외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을 강화해야 함
- 외국인 유학생, 외부인 등에 대해서는 연구윤리교육, 연구보안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해외나 타기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방지함
-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하거나 발표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는 절차를 만들어 사전에 공동연구자들과 공유함
- 기업에 연구개발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 보호관리 부서가 연구개발 성과물의 발표나 활용 등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개발 보호관리 부서를 따로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의 대표가 보안성 검토를 직접 실시하여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발표나 활용 여부를 결정하고, 검토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활용을 제한해야 함
-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연구 시작 전에 연구개발 기간, 특허나 노하우의 처리, 연구의 역할 분담과 비용분담, 연구개발 결과물의 귀속, 지식재산권의 출현 등의 처리, 지식재산권의 실시, 연구자의 사직이나 퇴직 등의 처리 등과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귀속 등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함

이슈 5-1

- 교원으로서 수행한 연구를 창업기업에 활용할 때는 기관의 승인을 받고 연구결과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기술료를 지불한 뒤에 연구를 수행해야 함

이슈 5-2

- 대학 내에 있는 취업개발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함
 - 대학에 있는 취업개발센터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시 필요한 적절한 연구보안 교육, 연구윤리 교육, 기업의 연구 참여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육하여 취업 후 보안사항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함



| 취업개발센터 활용의 예

석사학위를 마친 외국인 A학생은 한국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한국에 계속 남아 취업을 하길 원하였고, 소속대학의 취업개발센터 등을 통해 교원창업기업에 취업하였다.

※ 본 사례는 대학원생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임을 밝힘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 31조 1항-4 및 제16조) 국가연구개발성과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이나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원 창업자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소속기관으로부터 승계하여 소유해야 함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와 10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인간대상 연구 및 실험 동물 연구

< 표 10 > 인간대상 연구 및 실험 동물 연구의 주요 이슈 및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이슈	가이드라인
이슈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로서 ‘인간대상연구’와 ‘동물실험’을 수행할 경우 IRB와 IACUC의 승인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가로서 IRB 승인을 받거나 참여연구원에게 관련 교육을 시킬 때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동 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안내해야 함
관련 법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 7조/ 동물보호법 51조		



주요 이슈

[6] 인간대상 연구 및 실험 동물 연구

이슈 [6]-1

- 교원이 아닌 기업의 대표로서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IRB 승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

인간대상연구 : ①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②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③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체 유래물 연구 : ①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의미함, ②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배아연구 : 배아연구란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 중 연구목적으로의 이용에 동의한 배아를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이용하는 연구

배아줄기세포 이용 연구 : 등록된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예방·치료를 위한 연구 또는 줄기세포의 특성 및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 그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구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란 난자를 이용하여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고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체세포복제배아를 체외에서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

- 교원이 아닌 기업의 대표로서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IACUC 승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 이슈 발생

문제 | 사례

1. 살아있는 소의 배에 구멍을 내서 동물 실험을 하는 사료회사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출처 : 살아있는 소 배에 구멍내서 동물 실험,'학대'논란, 2019.06.21.



이슈 [6]-1

- 창업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까지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활용하여 IRB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함
 - 창업기업의 대표로서 기업을 위해 수행한 연구는 소속대학과 무관하나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기업이 지속적으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와 기관협약을 맺고 심의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속적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하거나 동물실험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함
 - 창업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까지는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동물실험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 일시적인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동물실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함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나 소속기관의 동물실험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자에게 지속적으로 생명윤리나 동물실험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이슈 ⑥-1

- 창업 기업이 인간대상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활용하여 IRB 승인을 받았음
 - 모대학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자가 교원으로서 실시하던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였음
해당 연구는 소속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연구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제품 개발에 들어갔으나 제품 개발 도중 IRB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음
 - 교원은 대학의 IRB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창업기업이 교외에 위치해 있고 교원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가 아니므로 심사를 거절당했음
 - 해당 교원은 공용IRB를 이용하여 해당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음

* 본 사례는 공용IRB의 활용을 보여주기 위해 저자에 의해 창작되었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생명위원회가 없는 기관의 연구자가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2조(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위원회 중에서 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 위탁한 업무
2.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간대상연구자 또는 인체유래물연구자가신청한 업무
3.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기관위원회에서 해당 연구를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행 기관은 각각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용위원회의 지정, 기능, 운영 및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로 본다.

- ②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3.>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6. 2. 3.>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의 관리 또는 동물실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 12. 19.>
1.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제1항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물보호법 제 25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다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자금

7 연구개발 과제의 신청 및 수행

< 표 11 > 연구개발 과제의 주요 이슈 및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이슈	가이드라인
이슈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연구자)이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함에 있어서,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를 대학 또는 교원창업기업으로 선택할 수 있음으로 인한 연구윤리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은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함에 있어서 대학과 교원창업기업 중 연구수행에 적합한 담당 기관을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고민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이슈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연구자)이 창업기업의 대표를 겸직함으로 인하여 적정 수준 이상의 과제를 수주함에 따른 연구윤리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학은 교원이 교원창업기업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대학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함
관련 법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가연구개발 혁신법 31조 1항-5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64조		



주요 이슈

7 연구개발 과제의 신청 및 수행

이슈 7-1

- 교원(연구자)이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함에 있어서,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를 대학 또는 교원창업기업으로 선택할 수 있음으로 인한 연구윤리 이슈
 - 연구개발과제 수주 시 간접비, IP 소유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연구성과의 경제적 이익이 보다 많이 귀속되는 교원창업기업으로 연구과제를 수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함
 - 또한 다수의 과제를 유치하는데 있어, 경제적 이익이 보다 많이 귀속되는 교원창업기업으로 가치가 높은 과제를 유치하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과제를 대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함
 - 모든 경우에 있어 대학은 경제적 불이익을, 학생은 연구참여기회의 박탈에 따른 학문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연구윤리의 핵심가치인 객관성(특정한 동기가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과 공정성(연구자원 배분, 연구업적 평가 등에서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측면에서 연구윤리 이슈가 발생함

이슈 7-2

- 교원(연구자)이 창업기업의 대표를 겸직함으로 인하여 적정 수준 이상의 과제를 수주함에 따라 연구윤리 이슈가 발생함
 - 대학의 교원으로 과제를 5개 수행(연구책임자 3개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창업기업을 통해 연구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연구성과의 질을 낮추고 타 연구자의 잠재적 이익을 침범할 수 있음
 - 이는 연구개발혁신법의 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가이드라인

⑦ 연구개발 과제의 신청 및 수행

이슈 7-1

- 교원은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하는데 있어 대학과 교원창업기업 중 연구수행에 적합한 담당 기관을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고민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연구실의 학생들에게 있어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통한 학문적 성취와 경제적 보상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교원은 항상 교원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윤리를 준수해야 함
 - 대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선언적인 형태라도 관련 규정에 내용을 규정화하고, 이를 교원창업기업 승인 시 교원창업가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임

이슈 7-2

- 대학은 교원이 교원창업기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대학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교원은 국가연구개발 참여과제수(3책 5공 등)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교원창업기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대학의 관련 부서와 상의해야 함



운영 사례

⑦ 연구개발 과제의 신청 및 수행

이슈 7

- 과제 '선정' 과정에서 '3책 5공' 위반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것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서 '수행'의 의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이를 환수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과제의 신청단계에서부터 종료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과제 신청 당시에는 3책 5공 위반 상태 아니어도, 과제 선정 당시 및 협약용 계획서 제출 당시 최근 다른 과제 선정되어 3책 5공 위반됨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협약 체결하였다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19두41836)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 31조 1항-5) 교원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해서는 안 됨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 35조) 교원은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위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함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8 연구비 부정사용

< 표 12 > 연구비 부정사용의 주요 이슈 및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이슈	가이드라인
이슈 8-1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가 계약서, 영수증 등의 위조·변조로 연구개발비를 전용·횡령함으로써 투자자 손실을 유발하는 연구비 부정 사용 이슈가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사용 10대 원칙”을 준수하여 정해진 용도와 사용 기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
이슈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가 창업기업에 연구원, 대학(원)생을 고용하면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여 연구비 부정 사용 이슈가 발생함	
이슈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부당 회수하는 경우(리베이트) 연구비 부정 사용 이슈가 발생함	
관련 법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1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1항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3조		



주요 이슈

8 연구비 부정사용

이슈 8-1

- 교원 창업자가 연구개발비 지출 시 계약서, 영수증 등의 위조·변조로 연구개발비를 전용, 횡령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손실을 유발함

이슈 8-2

- 교원 창업자가 연구원, 대학(원)생 등을 고용하면서 지급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하거나(인건비 부당회수), 대학(원)생을 학생 신분으로 취급하여 저임금 또는 무임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

이슈 8-3

- 교원 창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설·장비 임대, 재료·기기 구매, 성과 검증 테스트, 시제품 제작, 완제품 생산 등을 진행하면서, 연구진과 인적·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가족, 친인척, 지인)과 수의 계약함으로써 연구개발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사례, 지출된 금액 중 일부를 교원 창업자 또는 연구진 개인 계좌로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부당회수 사례 등에서 투자자 손실을 유발함



이슈 8

- (연구자의 책임성) 연구개발비는 교원 창업자 사유 재산이 아니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투자자와 공유한다는 목표를 위해 계약 조건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음
 - 교원 창업자의 연구개발은 투자자의 재원을 바탕으로 수행되므로, 교원 창업자의 이익 추구가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연구개발비 집행을 정직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음
- (공적 책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으로 정해진 용도와 사용 기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
 -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교원 창업자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민간 투자자 자금을 이용할 때보다 더욱 성실하게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책임이 요구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비 부정집행도 부정행위로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연구개발비 사용 10대 원칙 준수(「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2021)

- ①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사용한다.
- ②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사용한다.
- ③ 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기간(단계 연구기간) 동안에만 사용한다.
- ④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과 해당 사업에서 명시한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 ⑤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과 해당 사업에서 명시한 법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지급기준에 따른다.
- ⑥ 특정 아이템에 대해 연구개발비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책임부서(산학협력단 등)에 문의한다.
- ⑦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한다.
- ⑧ 연구개발비는 객관적인 증명서류(전자증빙 등)를 구비하여 집행한다.
- ⑨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과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⑩ 연구개발비 집행은 공무(公務)이므로 사무(私務)와 명확히 구분한다.

이슈 8-1

- 연구개발비 계약서, 영수증 등의 위조·변조로 투자자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거래 등으로 연구비 지출 방법을 제한함
 - 교원 창업자가 대학 및 연구지원 기업에 허위 계약서(연구개발비를 과다 계상한 허위 금액 기재 포함)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비를 자신의 개인 통장 계좌로 지급받아 전용, 횡령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음(출처 : YTN, “억대 연구비 빼돌린 교수 무더기 적발”, 2008.06.24. 연합뉴스, “해경, 연구 용역비 빼돌린 대학교수 등 입건”, 2011.09.06)
 - 2004-2005년 줄기세포 위변조 사태 당시, 연구책임자 H 교수가 수십 억원의 연구개발비를 63개의 개인 통장 계좌 사이에서 주고 받아 전용한 사례가 드러남(출처 : 국민일보, “차명계좌 63개 관리인까지 고용”, 2006.5.12)
 - 이후 연구비 지출은 연구비 용도로 지정된 전용 통장을 이용한 계좌이체, 지정된 신용카드 등으로만 결제하고, 그 지출 내역을 전자화된 문서로 보관하며(아래 <참고 1>), 수기 간이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아래 <참고 2>)의 관련 규정들을 마련함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같음할 수 있다.

<참고 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절차

연구책임자가 업체와 직접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시스템(RMS)에 거래명세서만 입력, 산학협력단에서 업체에 연구비를 지급
“이메일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업체로부터 수령하면 안된다. 업체에서는 거래명세서만 받고 RMS에 거래명세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정산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으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이슈 [8]-2

● 연구인력 고용 시 지급된 임금의 회수 또는 미지급 예방 방안을 마련함

- 교원 연구책임자가 연구원, 대학(원)생을 고용하면서 지급된 임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교수 개인 계좌로 반환하도록 요구하거나, “연구실 운영비에 필요하다”, “연구개발비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회수하는 사례(출처 : 세계일보, “대학원생 인건비 빼돌려 자녀 수업료에 이용”, 2022.7.13, 한국일보, “상아탑 횡령의 온상 연구비 공동관리”, 2018.9.17)
- 교원 연구책임자가 대학(원)생을 연구과제에 동원하면서 정식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업무수행도 일종의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무임금으로 활용하는 사례(출처 : 뉴시스, “대학원생 4명 중 1명 무보수 연구”, 2016.12.23)
- 한 대학원생은 교수가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강요한 사례를 제보했는데, 그 피해 규모가 5년간 8,000만원에 달했음(출처 : 국민일보, “성추행·연구비 착취 여전”, 2020.6.29)
- 2013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을 발표(현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통합). 대학이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부서와 계정을 설치하고,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를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제재하도록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86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과 제88조 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7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① 제86조 제3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이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제92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에 대한 조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통합관리계정책임자 등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이하 “학생인건비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재처분

이슈 8-3

-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연구비 과다 지출, 부당회수(리베이트) 차단 절차 필요
 - 교원 창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설·장비 임대, 재료·기기 구매, 성과 검증 테스트, 시제품 제작, 완제품 생산 등의 계약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있음
 - 이때 교원 창업자가 자신 또는 연구진과 인적·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가족, 친인척,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과다 산정하거나 지출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회수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손실을 유발함
 - 다음 사례는 교원 창업자가 자신과 인적·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

| 사례

교원 창업자가 가족 소유 회사들을 동원해 연구개발비 빼돌려

2015년 이후 수년 동안 전북대 S 교수가 새만금개발청, 한국전력 등의 풍력발전 연구용역을 여러 건 수행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및 친인척이 설립한 기업들에 풍력발전 설비 유지보수 계약을 몰아주었다. 마지막에는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 기업에 판매하겠다 적발되어, 사업권이 취소되고 및 검찰에 고발되었다. S 교수는 해당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연구용역을 맡긴 새만금개발청, 한국전력 등에서는 사업자의 시공자격, 능력 등을 심의하는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출처 : 조선일보, “새만금 풍력 7000배 대박 교수, 일가족 총동원”, 2022.10.7

- 교원 창업자가 연구개발 활동의 일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과 같은 법령을 준용하는 조치를 생각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집행도 부정행위로 규정함

- 예산계획서, 자금사용 영수증(구매 영수증, 임대 영수증) 등의 위조, 변조,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를 모두 부정행위로 규정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 :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혁신법 시행령」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1항 제2호 :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 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혁신법 시행령」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제3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제1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3조는 연구개발비 부당회수, 인건비 부당회수를 대표적인 부정사례로 적시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 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 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라. 인프라

9 연구실 안전

< 표 13 > 연구실 안전의 주요 이슈 및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이슈	가이드라인
이슈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로서 기업 내 실험실 안전에 대한 조치와 안전 교육과 관련한 여러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는 실험실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함
이슈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창업기업의 대표임과 동시에 교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장비 관리나 안전사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기업이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대학에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대학원생이 창업기업에서 종업원 신분이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 일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생의 입장에서 유리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관련 법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이슈

⑨ 연구실 안전

이슈 ⑨-1

- 교원 창업자로서 기업 내 실험실 안전에 대한 조치와 안전 교육과 관련한 여러 이슈가 발생

이슈 ⑨-2

- 창업기업의 대표임과 동시에 교원으로서 동시에 연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장비 관리나 안전사고 등



| 사례

1.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에서 폭발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연구자는 로켓 연료를 계측하는 실험을 실시하다가 사망하였음

출처 :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서 폭발.. 1명 사망, 연합뉴스.2019.11.13.



이슈 9-1

- 교원 창업자는 실험실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 1천명 마다 1명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의 대표로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연구실 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비상조치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함
 - 실험실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예상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함
 - 연구실 안전에 대비하여 실험실 내에 보호장비, 실험실 내 샤워장치, 완강기, 소화전, 화재경보기 등 안전 장비를 구비하고 비상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함
 - 유해물질, 방사성물질 등을 취급한다면, 실험복, 보안경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실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도 보호장비 등을 착용하도록 해야 함
 -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 진화, 대피, 응급조치요령 등이 포함된 비상조치 계획을 세우고 연구자들에게 교육해야 함
 - 실험실 내 샤워장치, 세안장치, 완강기, 소화전,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슈 9-2

- 교원 창업기업이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대학에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 교원이 대학 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두고 창업기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용하면 이를 대학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 교원이 교외에 창업을 하고 창업기업의 장비를 대학 연구실 내에 가져다 놓는 경우, 대학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공간 등의 사용료를 내야 함
- 대학원생이 창업기업에서 종업원 신분이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 일을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생의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이슈 9-1

- 창업기업의 대표로서 창업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연구자를 교육시킴
 - 「대학 내에 창업한 교원창업가는 인화성물질을 많이 보관하는 기업의 연구실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하였음
 - 「반응성이 큰 화학약품은 최소량만 구매하여 사용하고 화학 약품은 유해성, 반응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보관하며 유효기간을 초과한 화학약품 폐지 등을 교육하였음. 또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음
 - 「지정된 관리자는 매뉴얼에 따라 유효기간을 초과한 화약약품을 폐기하였고,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음

* 위 사례는 교원이자 창업기업 대표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이슈 9-2

-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자 대학원생인 A군이 창업기업에서 필요한 실험장비를 학교에 설치하다 폭발사고로 사망하였음
 - 창업기업에 필요한 실험장비를 학교 내 실험실에 설치하다 대학원생이자 창업기업의 종사자인 A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중대재해로 처리된 본 사건은 A군을 대학원생이 아닌 근로자로 처리하여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사례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2015년 발간한 [연구실 안전사고 사례집]을 각색한 것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12조) 연구기관의 장은 안전 유지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음

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③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6. 중대연구실사고 및 그 밖의 연구실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7. 연구실사고 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과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연구실의 종류·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 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0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 표 14 >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의 주요 이슈 및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이슈	가이드라인
이슈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창업자가 참여 연구원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연구자 간 상호 존중이 부족할 경우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관련 이슈가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육 운영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실 내 연구자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지향하는 연구실 문화 의식 교육을 실시해야 함
관련 법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93조, 제11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주요 이슈⁴⁾

10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이슈 10-1

- 교원 창업자가 참여 연구자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연구자 간에 존중하지 않는 경우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과 관련 이슈가 발생함
 - 다음 이슈 유형들은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인권과 인격을 무시하고, 개인이 자기 발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함
 -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 욕설, 폭언, 폭행 등을 동원: 상급자가 하급자를 부를 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업무에 실수가 있을 때 폭언으로 모욕을 가하거나, 신체에 주먹, 발길질 등 물리적 폭력을 가함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심야, 휴일 등에 연락하여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정당한 휴식을 방해하거나 근로조건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상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급자가 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연구원이 자기 경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주지 않음
 - 상급자가 특정 하급자에게 직장 내 회식, 기념행사 등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다른 동료들과 어울려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상급자가 선호하는 취미활동, 종교활동, 스포츠 등에 참여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함

4) 관계부처 합동(2019),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국무조정실) 참조

이슈 10-1

- 교육 운영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실 내 연구자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지향하는 연구실 문화 의식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오늘날 대부분의 첨단 연구개발은 1명 또는 극소수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 동료들은 물론 전 세계의 과학공동체가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수행하는 작업이므로 연구자 간 협업(collaboration)이 매우 중요함
 - 연구공동체 전체의 상호 존중 노력과 실천을 통해 연구자 간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연구환경이 조성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구개발 업무가 진행될 수 있음.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기술적 가치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음
- 규정과 제도 운영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과, 상대적 약자 (대학(원)생, 외국인 연구자, 여성 등)를 위한 인권보호 제도를 운영해야 함
 - 건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연구자 개개인의 존중과 배려 의식 교육과 더불어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정부 등에서도 규정과 제도로써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상대적 약자 위치에 있는 신진 연구자, 대학(원)생, 외국인 연구자, 여성 등을 위한 인권존중 교육, 인권보호 제도 등을 확립하고 그 이용을 확산시켜야 함
 - 교원창업기업 주변에 상대적 약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대학 인권센터,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 민간 인권단체 및 노동단체 등)가 있음을 홍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함

이슈 10-1

- (직장 내 괴롭힘 인식 강화) '직장 내 괴롭힘'(일명 '직장 갑질') 이슈는 연구실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교원창업 기업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유형들에 해당함
- 직장 내 괴롭힘과 유사한 연구실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국내 대학에는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연 1회 이상 대학에 소속된 모든 교원, 대학(원)생에게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교원 창업자는 연구원, 대학(원)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건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원과 대학(원)생은 자신의 인격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기적인 인권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문제 발생 시 인권센터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함
- 교원 창업자, 연구원, 대학(원)생은 서로가 존엄성을 보유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가 있을 때 연구수행의 효율이 향상되며 연구개발의 경제적·기술적 가치도 높아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 「근로기준법」 제93조 11호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116조 1항은 사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다(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고 규정하여 괴롭힘 범위를 폭넓게 인정

「근로기준법」의 '갑질' 방지 관련 조항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자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제9항,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산업재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 보상범위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참고자료 |

- 「고용노동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국내 사례, 2019년)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외국 사례, 2019년)

| 문의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 1350
- 괴롭힘상담센터 ☎ 전화 : 1522-9000
-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 ☎ 인터넷 : gabjil119.co.kr



참고문헌



| 법령 |

- 과학기술기본법(www.law.go.kr)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www.law.go.kr)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www.law.go.kr)
국가연구개발혁신법(www.law.go.kr)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www.law.go.kr)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www.law.go.kr)
동물보호법(<http://www.law.go.kr>)
발명진흥법(www.law.go.kr)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www.law.go.kr)
사립학교법(www.law.go.kr)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www.law.go.kr)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www.law.go.kr)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법(<http://www.law.go.kr>)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http://www.law.go.k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
특허법(www.law.go.kr)

| 규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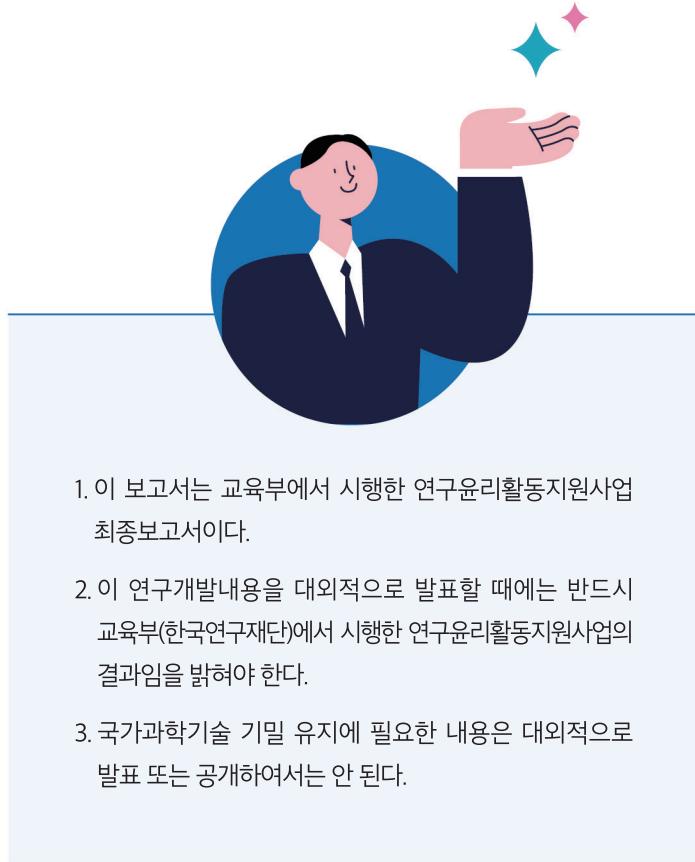
- 고려대학교 교원 윤리규정(<https://www.korea.ac.kr>)
서울대학교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https://law.snu.ac.kr/>)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https://law.snu.ac.kr/>)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지침(<https://law.snu.ac.kr/>)
한국과학기술원 창업규정(<https://rule.kaist.ac.kr>)
순천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https://www.scnu.ac.kr>)

| 보고서 |

관계부처 합동(2019),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국무조정실
고혁진 외(2021), 대학기술창업 혁신모델 발굴
고혁진 외(2022), 실험실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
고혁진 외(2022), 실험실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창업 네트워크 조성방안 연구
교육부·한국연구재단(2019), 대학 기술기반 창업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안내서
교육부·한국연구재단(2022),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안내서
교육부·한국연구재단(2022), 2021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2015), 연구실 안전사고 사례집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2017), 산업기술보호지침 및 매뉴얼
엄창섭, 이원용(2021), 「연구진실성 연구윤리 업무 매뉴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이효빈, 현명호(2020),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한국연구재단
이효빈, 조진호, 엄창섭(2022), 「대학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 한국연구재단
이효빈 외(2019), 「신진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
조남주 외(2022),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방안
한국연구재단(2021),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 신문 |

KBS NEWS, “살아있는 소 배에 구멍내서 동물 실험, ‘학대’논란”, 2019.06.21.
The Science Times, “연구 결과물 보호 위해 논문발표 전 특허 출원해야”, 2006. 11.12.
TV조선, “정부산하 공영홈쇼핑에서 짹퉁 명품 버젓이 판매”, 2020.6.23.
YTN, “억대 연구비 빼돌린 교수 무더기 적발”, 2008.06.24.
국민일보, “성추행·연구비 착취 여전”, 2020.6.29.
국민일보, “차명계좌 63개 관리인까지 고용”, 2006.5.12.
뉴시스, “대학원생 4명 중 1명 무보수 연구”, 2016.12.23.
더팩트, “가짜 공저자로 표지같이 대학교수 유죄 확정”, 2020.4.27.
보안뉴스, “외국인 산업스파이 사건”, 2007.03.10.
세계일보, “대학원생 인건비 빼돌려 자녀 수업료에 이용”, 2022.7.13.
시사IN, 2023.01.13.
연합뉴스, “실리콘밸리 사기극 테라노스 전 CEO 징역 11년3개월 선고”, 2022.11.19.
연합뉴스, “해경, 연구 용역비 빼돌린 대학교수 등 입건”, 2011.09.06.
조선일보, “만병통치 게르마늄 팔찌? 의학적 근거 없다”, 2018.2.8.
조선일보, “새만금 풍력 7000배 대박 교수, 일가족 총동원”, 2022.10.7.
한국일보, “상아탑 횡령의 온상 연구비 공동관리”, 2018.9.17.
한국일보, “허위광고 넘치는데 물러터진 공정위”, 2016.11.18.



1. 이 보고서는 교육부에서 시행한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한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비매품

교원의 기술 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

저자

고혁진/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이효빈/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
조진호/서울대학교 강사
황인호/국민대학교 조교수

감수

엄창섭/고려대학교 교수
윤철희/서울대학교 교수

기획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

발행 / 인쇄일자

2023년 8월 31일

발행처

한국연구재단

디자인 / 인쇄

디자인심원 042-486-5777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 042-869-6647

이 책자의 원문파일(PDF)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포털 홈페이지(www.cre.re.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교원의 기술 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